

문서번호	감사실-5093	★대리	팀장	감사실장	상임감사	이사장
보존기간	영구					
결재일자	2015.10.20.	협 조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184호					

- 권익위 및 서울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비 - 감사실 소관 내규 제정 및 행동강령 개정(안)

2015.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관련 내규 제정(안)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내규)을 명확히 하고, 적용상 혼란방지를 위해 각각의 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내규를 제정코자 함.

1 추진방향

-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안)」 준용
- 현행 「공익·내부비리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내규」 폐지
 - 공익신고 및 내부비리 신고에 대한 통합 규정으로 적용대상 내용 등 불명확
-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신고자 범위 확대)를 구분하여 별개의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내규 제정

2 추진경과

- 권익위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관련 가이드라인 통보 : `15.4월
 - ※ 관련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515(2015.4.15.)호
- 현행 관련 규정(내규) 전면 재검토 : `15. 8 ~ 9월
- 내규안 심의(기획조정실) : `15. 10. 2 ~ 10. 16

3 주요골자

1)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내규」 ※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내용

- ❖ 공공단체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반영
 - ◆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관련 인력·예산 등 반영(제3조), 교육실시(제5조)
 - ◆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제4조) 및 신고센터의 설치(제7조)
 - ◆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제8조부터 제20조까지)
 -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21조부터 제26조)

○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규정의 목적 및 정의, 공익침해행위 예방 등에 대한 공단의 책무(제1조~제3조)

※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단도 신고기관임.**

-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공익신고 보호제도 교육, 신고 의무(제4조~제6조)

○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7조~제20조)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제7조)
- 공익신고 상담, 신고 서식비치, 공익신고의 접수절차, 2명이상 연명 신고시 대표자 선정, 방문 출장접수, 누락 및 미흡시 보완 요구 (제8조~제14조)
- 공익신고의 취소 신청시 처리 절차, 공익신고기록의 작성관리, 공익신고의 해당기관 송부 절차, 신고의 하자로 인한 종결처리(제14조~제18조)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의 접수 관리(제19조~제20조)

○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1조~제26조)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와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제21조~제22조)
- 공익신고 임직원의 인사조치 우선적 고려, 징계의 감면(제23조~제24조)
-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25조~제26조)

2)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안)」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반영

- ◆ 보호 대상 신고자(내외부 구분 없음)의 정의(제2조)
- ◆ 신고자 비밀보장(제10조) 및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1조)
- ◆ 신고자의 신변보호(제13조) 및 협조자 보호(제15조)
- ◆ 신고자 포상 및 보상(제18~제23조)

○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규정의 목적 및 정의, 부패행위 방지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무(제1조~제3조)

※ 부패행위란?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단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임직원의 청렴의무 및 부패행위신고책임관 지정(제4조~제5조)

○ <제2장>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제9조)

- 신고 상담·접수, 신고내용 및 신고자 인적사항 비밀 유지(제6조)
- 접수된 신고 조사, 조사결과 부패행위 혐의 발견시 조치, 접수된 신고내용 조사 권한 없을시 관계 공공기관(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 송부, 신고사항 조사 처리 후 결과 신고자 통보(제7조)
- 신고자의 신고취하 및 신고의 종결 처리(제8조~제9조)

○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0조~제17조)

-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구제 절차·처리, 신고자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 시 불이익 추정 (제10조~제12조)
- 신고자 및 협조자 신변보호, 신고 임직원 인사조치 등 우선배려, 신고자 보호 위반 임직원 징계 등(제13조~제17조)

○ <제4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 (제18조~제23조)

- 부패신고에 따른 신고자 보상,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사유(제18조~제20조)
- 보상위원회 구성, 보상금 결정 및 지급 제외 (제21조~제23조)

4 향후 추진일정

- 방침 수립 : ~`15.10.21
- 공포 의뢰(→기획조정실) : ~`15.10.22
- 공포·시행 : ~`15.10.3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부정청탁 근절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반영

1 추진방향

-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준용
 - 직무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 불문 금품 등의 수수금지 등
- 「권익위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준용
 - ※ 관련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2142(2015.9.30.)호

2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안 심의(기획조정실) 완료(15.10.16)

-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정의 구체화(제2조 개정)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에 대한 별도 정의 없음· 4호(선물), 5호(향응)에 대해서만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에 대한 정의(4호 신설)· 금품 등 정의 (기존 선물, 향응 정의 포함)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부정청탁”이란 직무관련자가 직접 또는 제3자(재직중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금전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국내외의 출장·행사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숙박비·식비·행사비·관람료 등의 경비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이익

○ 부정청탁 금지 및 예외 행위 구체화(제14조 개정)

현행	개정
· 청탁예외 행위 별도 규정 없음	·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사항 신설

제14조(부정청탁·알선 등의금지)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단에 특정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 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2. 특정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3.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특정직무에 관한 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
4. 공단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5. 개인, 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임직원에게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 하는 행위
6.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연설·기고·발표 등을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신고·처리 절차 규정(제14조의 2 신설)

현행	개정
· 청탁알선 등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만 명시 (제14조 ②항) ■ 구체적 신고방법 청탁등록시스템운영지침 적용	· 부정청탁의 신고처리 과정 명문화 · 부정청탁의 신고지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의2(부정청탁의 신고·처리) ① 임직원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등록 시스템'에 등록하여 이사장이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받은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 부정청탁인지 알기 어려운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받은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또는 직무 재배정
3. 전보

③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에 대해 인사상 또는 포상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금품 등의 수수금지 강화(제17조 개정)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금지(①항) ·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수수금지(②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목여하 불문 금품 등의 수수금지 · 적용 예외사항 열거

제17조(금품 등의수수금지) ① 임직원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비
3. 통상적인 사고·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4. 공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부조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 치료비·주거비 또는 그 밖의 금품 등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6. 직원 상호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를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등
8. 임직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정관·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9.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격려금 등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

○ 외부강의 횟수 제한 및 대가기준(상한액) 변경(제21조 및 별표1 개정)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의 횟수 제한 없음 · 강의 대가기준(원고료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가를 받은 모든 외부강의 월 3회·6시간 제한 · 대가기준 상한액(원고료 포함)

제21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① ~④ 생략
- ⑤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

[별 표 1] (제21조 관련)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이사장·임원	3급 이상	4급 이하	비고
최초시간(상한액)	400(이사장) · 300(임원)	230	120	원고료포함
1시간 초과	300(이사장) · 200(임원)	120	100	

○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의무화(제28조 개정)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 구체적 명시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즉시 반환 명시

제28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21조 제4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향후 추진일정

- 방침 수립 : ~`15.10.21
- 공포 의뢰(→기획조정실) : ~`15.10.22
- 공포·시행 : ~`15.10.30

- 따로붙임 : 1.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내규(안) 1부
 2.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안) 1부
 3.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1부. 끝.